

#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

2011. 8. 5

한상국

## 개 요

□ 주 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

□ 일 시 2011년 8월 5일(금) 15:00~17:20

□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

□ 진행순서

15:00~15:10 개회사

▶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

15:10~17:00 주제발표 및 토론

▶ 사회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

▶ 발표자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
「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」

▶ 토론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
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
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
성철환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 
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
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
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
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

(가나다순)

17:00~17:2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

17:20 폐회

# 목 차

I. 과세의 필요성 .....	1
II. 과세대상자 .....	2
III. 과세요건 .....	3
IV. 과세방안 .....	4
[1안]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.....	4
[2안]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.....	7
[3안]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.....	9
[4안]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.....	12
[5안]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 산입 .....	14
V. 결어 .....	15

## I 과세의 필요성

- 2004년 상속·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·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-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전통적인 증여방식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<sup>1)</sup>로 볼 수 있음
  - 물량몰아주기는 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여(물량을 몰아주는 행위)에 의하여 수혜자의 재산가치(주식가치 등)를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증여행위에 속함
  - 이러한 증여행위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대주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어 세금 없이 부(富)를 이전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
- 비록 상속·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지만, 물량몰아주기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(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 등)이 미비한 상황임
- 따라서 수혜기업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<sup>2)</sup>이 물량(재화 또는 용역)을 수혜기업에게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함
  -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,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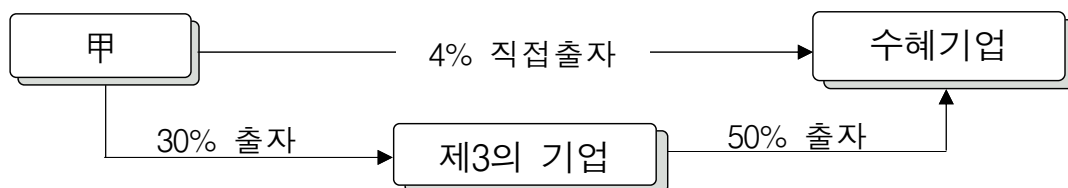
1)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: 이 법에서 “증여”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·형식·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·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[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.

2) 특수관계법인 :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(친족 등)가 30%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

## II 과세대상자

- 수혜기업의 지분이 3~5% 이상인 자로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(1인)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(예 : 6촌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)
  - 3~5% 미만의 소액주주 또는 친족외의 자까지 모두 과세대상자로 포함할 경우
  - 해당 과세자의 세액이 크지 않으면서, 기업 및 주주들에게 납세비용만 과도하게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
  - 과세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납세자들과 국민들이 최대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  - 제3의 기업을 이용하여 수혜기업에 출자한 경우는 간접출자비율<sup>3)</sup>을 포함하여 3%~5% 이상 및 지배주주를 판정

### <사례> 간접출자비율의 계산



- ◆ 甲의 수혜기업 출자비율 = 19% (직접 출자 4% + 간접 출자 15%\*)
- \* 간접출자비율(15%) = 30%×50%

- 다만, 간접출자비율은 3단계이상 출자관계까지 고려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, 2단계 출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3) 수증자인 주주의 제3의 기업 출자비율 × 제3의 기업의 수혜기업 출자비율

### Ⅲ 과세요건

- 수혜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(예 : 30% 등)을 초과할 것
  -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(예 : 30% 등)의 경우만 과세
- ※ 「상속·증여세법」상 저가·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시,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±30%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점 (즉, 정상적 거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) 등을 감안해서 일정비율을 정할 필요 있음

<수혜기업 매출거래 기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>

$$\text{거래비율(\%)} = \frac{\text{특수관계기업들과의 매출거래의 합계액}}{\text{수혜기업의 총 매출액}} \times 100$$

- 2 이상의 수혜기업이 있는 경우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이 일정비율(예 : 30% 등) 초과인지 여부는 수혜기업별로 각각 판단

## IV 과세방안

### (1안)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

- 물량몰아주기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의 상승분을 과세기준으로 함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물론 기업가치(주식가치)의 상승은 물량몰아주기 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증여이익 계산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가치 증가분 사용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음

#### ① 증여재산가액

$$\{ (가) - (나) \} \times (\text{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} - 30\%) \times \text{주식보유비율}^1)$$

(가) : 사업연도말 기업의 시가총액

(나) : 사업연도초 기업의 시가총액

1)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한 주식보유비율

#### ②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

- 물량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가격 하락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
  - ※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음
- 이전 사업연도의 최고 주식가격보다 높게 상승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시 과세

### ③ 주식양도의 경우

- 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\*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

\* 주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양도비율(양도한 주식수 /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)을 곱하여 계산

$$\text{양도차익} = \text{양도가액} - \left[ \text{취득가액} + \text{증여재산가액} \times \frac{\text{양도 주식수}}{\text{보유 주식수}} \right]$$

- 이 경우 직접출자주식과 간접출자주식을 구분하여 계산

### ④ 적용시기

- 적용시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점('04년)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## 5 장 · 단점

### 장점

- 여러 방안 중 상대적으로 변칙적인 상속·증여에 대한 철저히 과세하는 방안
- 수혜기업의 대주주가 실제 얻는 이익은 수혜기업의 실제 기업주식가치 상승 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

### 단점

- 주식가치 상승이 몰량 몰아주기로 인한 것인지 그 외의 요소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 여부
- 주식가치에 주주가 얻을 미래 예상 수익이 반영되어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경향
- 주식가격 하락시 기납부 증여세 환급 요구 예상

## (2안)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

- 특수관계법인과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
### ① 증여재산가액

$$\text{세후영업이익}^1) \times (\text{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} - 30\%) \times \text{주식보유비율}^2)$$

1) 세후영업이익 : (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 법인세 등)  $\times$   $\frac{\text{영업이익}}{\text{당기순이익}}$

2)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한 주식보유비율

### ② 주식양도의 경우

- 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\*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산

\* 주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양도비율(양도한 주식수 /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)을 곱하여 계산

$$\text{양도차익} = \text{양도가액} - \left[ \text{취득가액} + \text{증여재산가액} \times \frac{\text{양도 주식수}}{\text{보유 주식수}} \right]$$

③ 적용시기 :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음

④ 장 · 단점

#### 장점

- 주식가치평가, 업종별 주가상승률 등 인위적 평가요소 최소화
- 주가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 발생시 과세 가능

#### 단점

- 수혜기업의 영업이익과 수증자(주주) 증여이익간 상관관계가 낮음
- IFRS 도입이후 영업이익 산정의 범위에 대한 논란 가능성

### (3안)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

- 특수관계법인과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되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
  - 이 경우 국제조세에서 특정외국기업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제도로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됨
  
- 다만, IFRS에서는 기존의 회계처리와 달리 영업이익, 영업외이익, 특별이익과 같은 이익의 구분이 없지만, IFRS를 도입하였다고 영업이익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
  -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는 간단해지지만 주식에서 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영업이익 계산이 가능

#### 1] 과세대상 배당간주 영업이익

$$\text{세후영업이익}^* \times (\text{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} - 30\%) \times \text{주식보유비율}$$

\* 세후영업이익 : (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 법인세 등) ×  $\frac{\text{영업이익}}{\text{당기순이익}}$

## ② 배당간주시기

- 상기 금액을 수혜기업으로부터 주주가 매 사업연도 말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(매년 과세)

## ③ 중과세율 적용 : 할증과세 (45% 적용)

- 종합소득세 최고세율(35%)을 30% 할증과세 한 세율(45%)을 적용
  - 현행 상증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가치를 감안하여 시가의 30%를 추가로 할증평가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임

## ④ 이중과세 조정

- (법인세)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
- (실제 배당시) 분리과세된 배당간주영업이익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
- (주식 양도시) 1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

$$\text{양도차익} = \text{양도가액} - \left[ \text{취득가액} + \text{배당간주소득}^* \times \frac{\text{양도 주식수}}{\text{보유 주식수}} \right]$$

\* 분리과세 배당간주소득 합계액 - 실제 배당액 합계액

## ⑤ 적용시기 : (1안)과 동일

## ⑥ 장·단점

### 장점

- 주식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배당간주영업이익을 계산하여 과세가 가능
- 현재도 유사 제도가 존재하여 제도 설계가 쉽고 과세논란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음
  - 유사 제도 : 국조법 §17(특정외국기업의 유보소득 배당간주)
- 주식평가 등 인위적인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음

### 단점

-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문제와 일반 배당과 차별하여 중과세율(45%)을 적용하는 논리적 타당성
- 변칙적인 상속·증여로 인식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으로서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는 문제

## (4안)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

### ① 과세대상

- 특수관계법인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기업

### ② 과세요건

- 수혜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(예 : 30% 등)을 초과할 것
  -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(예 : 30% 등)의 경우만 과세
-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방안과 다르게 계열사간 모든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로 작용 가능

### ③ 과세방법

- 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30%를 초과한 물량 몰아주기비율을 곱한 금액(과세대상 영업이익)에 30%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

$$\text{세후영업이익}^* \times (\text{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} - 30\%) \times \text{할증세율(예: 30\%)}$$

$$* \text{세후영업이익} = \text{각 사업연도 순손익액} \times \frac{\text{영업이익}}{\text{당기순이익}}$$

#### 4 장 · 단점

##### 장점

- 제도 설계가 쉽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음
  - ※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(법인세법 §55의2)와 유사한 방법
-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이 과세대상인 경우 일부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는 논란의 소지를 배제
  - 사실상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결과

##### 단점

-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우려
-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
- 변칙적인 상속·증여로 인식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으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하는 결과

## (5안)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

### ① 과세방안 : 물량을 몰아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

- 물량공급기업(특수관계기업)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(재화·용역 구입비)의 일부(예: 10%~20%)에 대해 손금불산입

### ② 장·단점

#### 장점

- 현행 법인세법상 체계에 쉽게 적용이 가능

#### 단점

- 물량 몰아주기 이익 과세가 아닌 물량공급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되어 「공정거래법」상 과징금과 중복 가능성
- 물량을 몰아준 기업의 소액주주 이익까지 침해 가능

## V | 결어

- 특수관계 기업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기존의 증여와 다른 방식이나 사실상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
- 이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
- 각 방안별로 장·단점이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판단되나, 가능한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